

辨理士의 法的地位와 權限

〈下〉

—承 前—

朴 鎔 煥

〈辨理士〉

그리고 이는 사실상의 진술에限하고 職權探知主義가適用되는法規解釋이나 어느 사실에 바탕을둔法律效果의 진술과 같은 법률상의 진술 및各種申請事件에는適用되지않는다.

④ 數人의 변리사가 있을 때에는 内部的으로共同代理, 合議代理와 같은 特約이 있다하더라도各自本人을 대리한다. (民訴法 84. 民法 119)

數人の 변리사가 공동하여代理權을行使하는 경우에는書類는 그 중 1人에게 송달하면된다. (特許法施行令 6조 ⑥)

수인의 변리사가 각자 본인을 대리하는同時に 서로矛盾되는 행위를 하면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. 그러나 때를 달리하여 같은 행위를 하면前者의 행위가 취소 또는 徹回할 수 있는 것이라면 뒤의 행위가효력을 발생하고反對인 경우에는 뒤의 행위가無效로된다.

同一人을 대리하는 변리사들이 서로矛盾되는 진술을한다는 것은 心證形成上重大한 영향을 줄 것이다. (民訴法 187. 自由心證主義)

3. 辨理士의 權限

1) 委任에 의한 대리인(변리사)의 대리권은法定되어 있다. 이 대리권은 制限할 수 없다.

절차의圓滑과確實을 위해서이다. 그러나 非辨理士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를 尊重하여適當한 제한이 許容된다. (民訴法 82③)

그. 변리사는 그 위임맡은 사건에 대하여審判에參加(特許法 115)한다든지 強制執行, 假押留, 假處分에관하여 訴訟行為를 할 수 있다(民訴法 82① 辨理士法 8). 이 대리권은特定한 審級에限定된다. 그 許容되는 절차행위는 明文上上記한 것에限한 것 같으나 本請求에附隨되는 절차인 證據保全(特許法 116), 補償金額 또는代價에 관한不服의 訴(特許法 152), 各種異議에대한 防禦는 물론이오. 제3자의 審判參加에 방어할 권한이 있다.

이런점으로 절차위임은 私法上의 대리권의 授權을包含한다고 할 것이다.

그리고 訴訟費用의 辨濟를 領受할 권한도 있다.

ㄴ. 特許法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중요절차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(特許法 23).

① 特許出願의 變更, 抛棄, 取下, 請求의 申請이나 신청의 取下 및 第125條의 규정에 의한 查定不服抗告審判의 청구 또는 復代理人의 選任등이다.

② 明文에는 없으나 그趣旨로 보아서抗告審判權의 抛棄(特許法 129條 公益的理由로抗告審判以外의 審判請求權의 抛棄는 不可)上告權의 포기(民訴法 395, 364) 따위도 特別授權事項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. 審級代理가 인정되는 근거는 여기에 있다.

그리므로 스스로 심판청구나 항고, 상고를 할 수 없으며 相對者가 提起한 항고, 상고에 대하여도 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.

私法上契約으로서 변리사선임이 全審級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當該審級代理에만 그친다. 따라서 심급은 당해심급에 있어서의 終局審決까지만을 말하느냐 또는 항고, 상고에 의하여 移審의 효력이 발생하기 까지나에 대하여 異論이 있으나 심결이 終結된 후 항고(상고)제기까지의 사이에 변리사 없는 空白時期가 있어서는 안될 뿐 아니라 理論上 審決이 終結됨으로써 곧 그 심급을 離脫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되거나 항고(상고)의 제기에 의하여 移審의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사건은 심급을 이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移審의 효력이 발생되기까지 보는 것이妥當하다.

따라서 現行法上 初審의 대리인이 外國의 委任人을 위해서法定期間을 延長申請하더라도 인정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.

③ 再審에서는 再審前 辨理士의 대리권이 미치지 않으나 還送(特許法 135. 民訴法 406)된 뒤의 절차수행에 대해서는 還送前 代理人의 代理權限이 미친다. <完>